



#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 검 토 보 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김선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218호)
- 한병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40호)
- 김도읍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101호)

2024. 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 목 차

|                               |    |
|-------------------------------|----|
| I. 제안경위 .....                 | 1  |
| II. 제안이유 .....                | 2  |
| III. 주요내용 .....               | 5  |
| IV. 검토의견 .....                | 9  |
|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           | 9  |
| 2. 법 제정에 대한 관계 기관·단체 의견 ..... | 14 |
| 3.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         | 17 |
| 4.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       | 18 |
| 5. 주요 항목별 검토 .....            | 22 |
| (1) 제명 .....                  | 22 |
| (2) 목적 .....                  | 23 |
| (3) 정의 .....                  | 24 |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 27 |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 28 |
| (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 31 |
| (7)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 33 |
| (8)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       | 36 |

|                               |    |
|-------------------------------|----|
| (9) 전문인력의 양성 .....            | 41 |
| (10) 창업 지원 .....              | 43 |
| (11) 기술개발의 촉진 .....           | 45 |
| (12)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    | 47 |
| (13)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 50 |
| (14) 금융지원 등 .....             | 53 |
| (15) 전담기관의 지정 등 .....         | 55 |
| (1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 ..... | 60 |
| (17) 규제개선 신청 등 .....          | 64 |
| (18)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 71 |
| (19) 보고 및 조사 .....            | 74 |
| (20) 권한의 위임·위탁 .....          | 76 |
| (2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 78 |
| (22) 과태료 .....                | 79 |
| (23) 부칙 .....                 | 81 |

## I . 제안경위

### 1. 김선교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선교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6. 7.

다. 회 부 일 : 2024. 6. 11.

### 2. 한병도의의원안

가. 제 안 자 : 한병도의의원 등 12인

나. 제 안 일 : 2024. 6. 24.

다. 회 부 일 : 2024. 6. 25.

### 3. 김도읍의원안

가. 제 안 자 : 김도읍의원 등 13인

나. 제 안 일 : 2024. 6. 28.

다. 회 부 일 : 2024. 7. 1

## II. 제안이유

### 1. 김선교의원안

미래 유망 新산업으로 주목되고 있는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이 융복합된 분야로서, 식품산업에 인공지능(AI), 로봇틱스, 정보통신기술, 바이오테크(B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것으로 식품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 소비에 이르는 전 분야에서 혁신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일컬어지고 있음.

최근 식품 소비트렌드가 환경·건강 중시,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활성화 등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글로벌 환경문제와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으로 푸드테크를 주목하고 있음.

또한 ‘미래농업의 황금알’로 불리는 푸드테크는 청년 일자리 창출, 농식품 수출 확대 등 우리 경제의 발전과 우리 농업과 식품산업의 상생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어 농업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됨.

우리 정부도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방안을 마련하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 및 인력 양성 및 안전관리 기준 마련 등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세우려 하고 있으나, 푸드테크 관련 법 제도적 기반이 없어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임.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통해 푸드테크 발전을 견인하고 있어,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푸드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함.

이에 푸드테크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푸드테크 관련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시키고,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2. 한병도의원안

최근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적용한 신산업 ‘푸드테크’가 전세계적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규모는 약 5,542억 달러(약 665조원)에 달하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연평균 약 38퍼센트의 고성장을 보이고 있음.

최근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적극적인 정책 지원 및 투자를 통해 푸드테크 발전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관련 제도 부재로 중장기적 푸드테크 산업 지원, 인력 육성 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푸드테크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푸드테크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3. 김도읍의원안

푸드테크(Foodtech)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결합된 신산업으로, 코로나19 이후 세계 식품 소비 유행이 건강과 환경 중시의 가치소비 확산, 개인 맞춤형 소비, 비대면 소비 등으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고성장이 전망되는 산업 분야로 성장하고 있음.

2020년 기준, 세계 푸드테크 시장 규모는 665조로 미국, EU 등은 푸드테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관련 규제 완화와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 및 제도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인 한편, 우리나라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전무한 실정임.

이에 푸드테크를 청년 창업 확대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기회로 활용하는 등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 Ⅲ. 주요내용

#### 1. 김선교의원안

- 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7조)

## 2. 한병도의원안

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 3. 김도읍의원안

가.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며 통계를 작성·관리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

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함(안 제7조).

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의 촉진,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금융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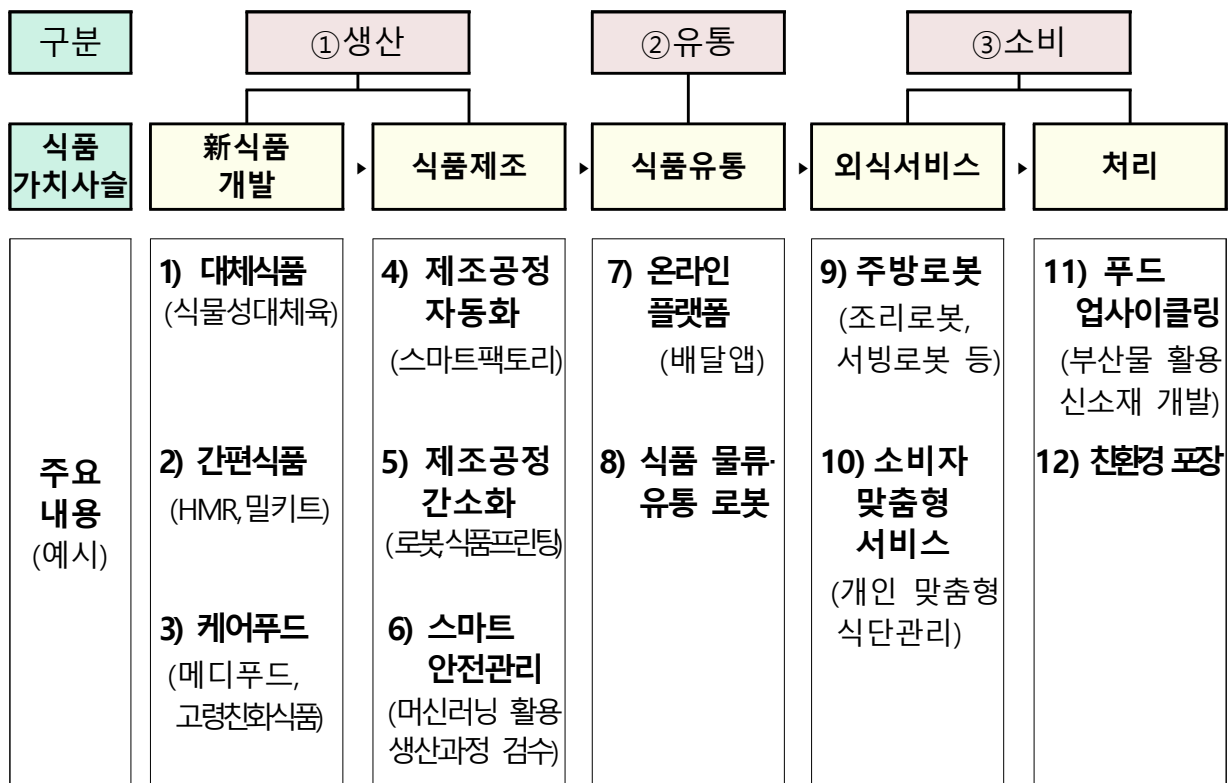
사.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

## IV. 검토의견

### 1. 법률 제정의 필요성

푸드테크산업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의 전 과정에서 IT·BT·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하여 농식품산업의 혁신성장과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새로운 산업 분야로서, 식물성 대체식품, 식품프린팅·로봇 활용 제조공정 자동화, 온라인 유통 플랫폼, 무인주문기, 서빙·조리·배달로봇 등을 포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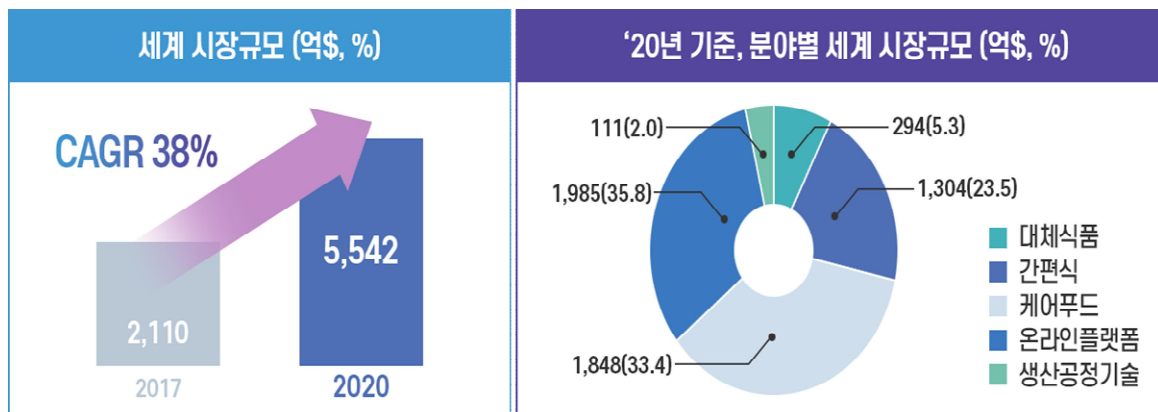
[푸드테크산업 가치사슬 구조도]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 8. 16. 제출

농림축산식품부 추산 푸드테크 관련 세계 시장규모는 2020년 기준 약 5,542억 달러로 2017년 이후 연 38% 성장하는 등 고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푸드테크 세계 시장 규모]



※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 8. 16. 제출

이러한 고성장·고부가가치 산업인 푸드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관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도 별도의 조례를 제정<sup>1)</sup>하여 푸드테크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지속적 성장을 도모하고 있음.

또한 미국·EU 등은 푸드테크 관련 규제완화 및 기술투자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과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음.<sup>2)</sup>

반면, 국가차원에서의 푸드테크산업 지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근거나 종합적 체계는 마련되지 못한 상황임.

1) 「춘천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경상북도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4. 3. 20. 제정), 「과천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푸드테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나주시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2) 미국: '2020 국가 인공지능 이니셔티브 법'을 통해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  
EU: Horizon Europe을 통해 대체 단백질 소재 개발 등에 연구지원 수행

3개의 제정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정의 및 범위 구체화,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연구개발·인력육성 등 사업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푸드테크 산업 육성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추진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은 현행 「식품산업 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sup>3)</sup>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푸드테크 산업 육성 관련 예산 역시 같은 법을 근거로 2024년도 기준 639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푸드테크산업 육성정책이 2022년<sup>4)</sup>부터 이미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과

‘식품소재’ 분야에 있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린바이오산업과 중복될 소지가 있고, 푸드테크산업과 기존 식품산업과의 뚜렷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 푸드테크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의 고유업무라고 하기에 그 범위가 넓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할 것으로 보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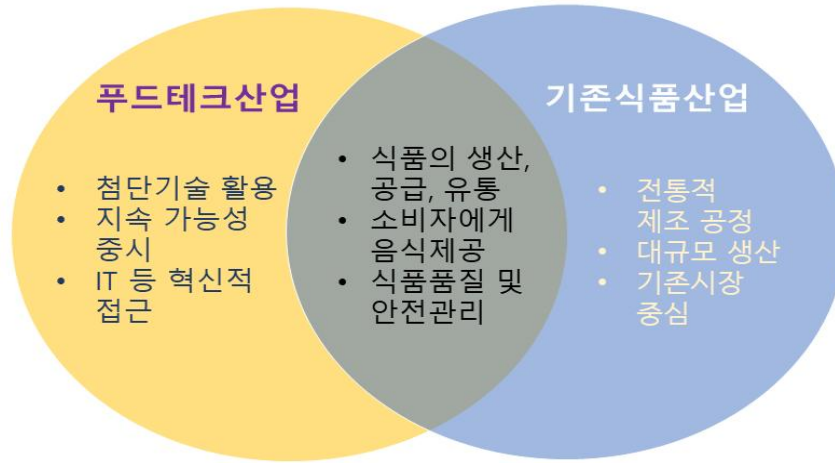
3) 「식품산업 진흥법」 제8조(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 진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식품산업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
2. 식품산업의 진흥·육성 등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3. 전통식품 세계화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 3의2. 식품의 기능성에 대한 연구·개발
4.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및 실용화에 관한 사항
5. 기술협력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식품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식품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식품산업기술 등을 연구·개발하거나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정부는 2022년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R&D등 사업을 본격 추진함

## [푸드테크산업과 기존 식품산업과의 관계]



| 구분           | 푸드테크산업                                                                     | 기존식품산업                                                                  |
|--------------|----------------------------------------------------------------------------|-------------------------------------------------------------------------|
| 기술활용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을 통해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과정 혁신           | 전통적인 제조공정, 대량 생산시스템, 공급망 관리, 마케팅에 집중                                    |
| 혁신성          | 식량부족, 환경오염,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체 단백질(식물성고기, 배양육), 식품 폐기물 감소 기술 등 혁신적 기술 사용 | 기존 소비자의 수요 충족, 시장점유율 유지·확장에 중점<br>기존의 공급망, 생산 방식, 유통 시스템 등 사용           |
| 비즈니스 모델      | 스타트업이 주도하는 경우 다수<br>정기 구독형 서비스, 온라인 식품 플랫폼, 등 기술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개발          | 대형 기업이 시장 주도<br>오프라인 유통망과 대규모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함                              |
| 지속가능성 · 환경영향 |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설정<br>친환경 생산방법, 에너지절감, 탄소중립, 미래식량문제 해결 등 중시                     | 대규모 생산·유통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큼<br>(일부 식품기업은 ESG 경영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중시) |
|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 앱을 통한 식품 주문, 맞춤형 영양 정보 제공, 온라인 리뷰와 피드백 시스템 등을 통한 개인적·즉각적 소비자와의 상호작용 추구     | 대량생산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br>오프라인에서 소비자와 상호작용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이와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식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722호, 임호선의원 대표발의)에도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해당 의안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식품산업진흥법」의 일부개정과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 중 어느 방식이 더 적절할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일부개정방식은 기존에 존재하는 체계와 법적 구조를 활용하므로 법 정비와 행정절차가 간소화되고, 기존 법률체계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법 해석과 적용에 혼란을 줄일 수 있으나,

기존 법률의 구조와 틀 안에서만 개정이 가능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이 법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반영되기 어렵고, 개정의 범위가 제한되며, 새로운 산업의 특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워 혁신적 사안의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가 있음.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방식은 푸드테크산업의 특성과 필요성에 맞춘 법률 제정으로 해당 산업에 최적화된 법적 틀을 제공할 수 있고 포괄적 지원이 가능하며, 새로운 산업 또는 급변하는 기술에 대응하여 혁신적 대응을 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률이 기존 법률과 중복·충돌할 가능성, 새로운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조직·시스템 마련에 따른 행정적 비용 부담 등의 한계가 있음.

또한 새로운 산업 분야마다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입법효율성 문제도 함께 고려할 사항임.

이는 식품산업과 푸드테크산업 간의 관계,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 필요성, 현행 제도 및 법률 체계와의 중복 여부,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 관계 기관·단체 의견

### (1)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푸드테크 분야 원천기술 확보 및 신소재 개발 등을 위한 R&D 투자, 푸드테크 기술사업화 교육,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지원 등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 시 관련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는 입장임.

한편, 「식품산업진흥법」의 범위는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 한정되어 있어, 온라인 유통플랫폼, 세포배양 식품, 조리로봇 등의 분야를 포함하는 푸드테크산업을 담기에는 한계가 있고, 「푸드테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산업계의 요구가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푸드테크산업 분야별 식품산업 진흥법 포함가능 여부]

| 구분                                       | 푸드테크 분야                                                                                                                                                                                                  |         |
|------------------------------------------|----------------------------------------------------------------------------------------------------------------------------------------------------------------------------------------------------------|---------|
| ① 식품산업진흥법 포함 가능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맞춤형 식품(건강기능식품, 고령친화식품 등)</li> <li>▶간편식품(즉석조리·섭취식품, 간편조리세트 등)</li> <li>▶식물기반 식품, 푸드업사이클링</li> </ul>                                                               | 푸드테크 산업 |
| ② 식품산업진흥법 포함 불가능 분야<br>(식품산업 관련 첨단기술 분야)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식품 스마트 제조(식품업 스마트공장)</li> <li>▶식품 스마트 유통(온라인 유통플랫폼)</li> <li>▶식품 3D프린팅(프린터, 식품 잉크 소재)</li> <li>▶외식 혁신 서비스(조리·서빙로봇, 키오스크)</li> <li>▶세포배양 식품, 친환경 식품포장재</li> </ul>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 (2)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양 대체육<sup>5)</sup> 등 푸드테크 관련 신산업에 대한 R&D와 시제품 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대응 및 탄소중립을 위하여 블루푸드<sup>6)</sup>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상황에서 블루푸드 분야 푸드테크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이를 위해 별도의 제정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해양수산부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있는바, 김도읍의원안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음.

5) 전통적인 육류 대신 식물성, 미세조류, 또는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 제조된 육류 제품

6) 바다, 강, 호수 등 수생 환경에서 생산되는 식품으로 생선, 해산물, 해조류, 기타 수생작물을 의미

### (3) 한국푸드테크협의회

한국푸드테크협의회는 당면한 기후변화 및 인력부족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한편, 기존 「식품산업 진흥법」에 따른 지원이 식품 제조·유통 등을 영위하는 전통적 사업을 지원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데 반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은 식품의 제조·유통 뿐 아니라 식품소재, 로봇, 스마트공장, 거래플랫폼 등을 아우르는 산업분야로서 스타트업을 포함한 보다 다양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를 반영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4) 식품산업협회

식품산업협회는 현재 식품기업 중에도 대체식품, 세포배양식품, 개인 맞춤형 상품 등 푸드테크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중에 있으므로 관련 법 제도적 기반이 신속하게 마련되는 것이 산업 육성에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임.

다만, 「식품산업 진흥법」의 경우 제1조(목적)에 '식품 산업과 농업과의 연계 강화'를 수단으로 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전반에 핵심기술을 결합하는 푸드테크 산업의 진흥과 지원 체계를 모두 포함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편이 적절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5) 축산단체

축산단체<sup>7)</sup>는 푸드테크산업 중 대체식품 및 세포배양식품 산업 등이 축산업의 대체재로서 축산물의 수요를 경감시킬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식품기업이 대체식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육류보다 우위에 있다는 내용을 표현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sup>8)</sup>.

## 3. 제21대 국회 심사경과

동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달곤의원안(제2123033호), 한병도의원안(제2123657호)]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되어, 법안심사소위원회(2023. 12. 20.), 안전조정위원회(24. 1. 15.) 및 전체회의(2024.2.1.)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 바 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 임기만료 폐기된 바 있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의 중복여부, 「식품산업진흥법」외 별도 법률 제정의 실익, 한우업계의 우려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농식품산업 고도화 및 발전을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음.

7)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전국한우협회, 대한한돈협회, 대한양계협회

8)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대체식품 표시협의체('22.10월~, 8회)에서 축산단체 등과 대체식품 표시 방법에 대해 논의하여 「대체식품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23.11.27)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향후 대체식품 관련 정책 추진 시 축산단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 4. 제정안의 구성 및 주요내용

3개의 제정안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김선교의원안은 총 21개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한병도의원안 및 김도읍의원안은 총 20개의 조문과 2개의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제1장은 푸드테크과 푸드테크산업 등을 정의하고,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관련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제2장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제3장은 푸드테크 관련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의 방법·절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과 기술개발 촉진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며, 창업 지원,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연구시설·장비·금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푸드테크와 관련된 국제협력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 관련 업무의 체계적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별 푸드테크 기업 유치기반 조성을 위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며,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제4장은 푸드테크사업자와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 및 청문,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한의 위임·위탁, 전담기관 및 위탁업무 종사 기관 등의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부정한 사업자 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

| 구 분                              | 김선교의원안                                                                                                                                                                                                                          | 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1장<br>총칙                        | 제1조(목적)<br>제2조(정의)<br>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r>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조(목적)<br>제2조(정의)<br>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r>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 제2장<br>푸드테크산업<br>육성기본계획의<br>수립 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br>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br>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
| 제3장<br>푸드테크산업<br>육성을 위한<br>지원 등  |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br>제8조(전문인력의 양성)<br>제9조(창업지원)<br>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br>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br>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br>제13조(금융지원 등)<br>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br>제15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br>제1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br>제17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br>제8조(전문인력의 양성)<br>제9조(창업지원)<br>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br>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br>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br>제13조(금융지원 등)<br>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br>제15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br>제1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
| 제4장<br>보칙                        | 제18조(보고 및 조사)<br>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br>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br>제21조(과태료)                                                                                                                                                           | 제17조(보고 및 조사)<br>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br>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br>제20조(과태료)                                                                                                                                   |
| 부칙                               | 제1조(시행일)<br>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제1조(시행일)<br>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

한편, 각 제정안들은 조문별로 그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 달리 정하고 있음.

제정안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총괄부처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안 제5조),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안 제7조), 전담기관의 지정(안 제14조),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안 제15조), 규제개선 신청(안 제16조), 보고 및 조사(안 제18조·제19조), 과태료(안 제20조·제21조)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둔 것으로 볼 때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로 상정하였음을 알 수 있음.

다만, 여러 부처에서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할 때 그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지원규정의 주체는 정부로 두고 있음.

#### [각 조문별 주체]

| 주체        | 관련조문                                                                                                                                                                                                |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br>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김도읍의원안)<br>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br>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br>제15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br>제1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br>제18조(보고 및 조사) (김선교의원안)<br>제19조(보고 및 조사) (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주체        | 관련조문                                                                                                                                              |
|-----------|---------------------------------------------------------------------------------------------------------------------------------------------------|
|           | 제20조(과태료) (김선교의원안)<br>제21조(과태료) (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정부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김선교·한병도의원안)<br>제8조(전문인력의 양성)<br>제9조(창업 지원)<br>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br>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br>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br>제13조(금융지원 등)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제17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김선교의원안)<br>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한편, 푸드테크 분야별 유관부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푸드테크 산업 분야별 유관부처]

| 주체      | 관련조문                  |
|---------|-----------------------|
| 산업통상자원부 | 식품 3D프린팅과 조리서빙배달로봇 분야 |
| 중소벤처기업부 | 식품 스마트제조 분야           |
| 해양수산부   |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제조 분야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이하에서는 각 조문별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4. 주요 항목별 검토

##### (1) 제명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의 제명을 김선교의원안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병도·김도읍의원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으로 규정하고 있음.

| 김선교의원안                             | 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u>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br/>관한 법률안</u> | <u>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u> |

###### 나.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의 경우 제명에 ‘육성 및 지원’<sup>9)</sup>을 사용하는 사례와 “육성”<sup>10)</sup>을 사용하는 사례가 병존하고 있는 바, 제명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으로 보임.

다만, 제명을 ‘육성 및 지원’으로 할 경우, 국가 등의 책무,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계획수립 등 조항에서 해당 용어를 일괄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9)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10)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말산업 육성법 등

참고로 제21대에서는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으나, 제22대에 발의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에서도 ‘육성과 지원’에 관한 내용이 포함<sup>11)</sup>되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2) 목적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제정안은 법 제정의 목적이 푸드테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통해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안 제1조)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 나. 검토의견

목적규정은 법률의 제정목적과 입법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개별 조문을 해석하고 집행할 때 그 구체적 의미를 명확히 하는 해석지침으로서의 역할을 함.

11) 제1조(목적) 이 법은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산업과 첨단·혁신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안은 이 법의 제정목적이 푸드테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산업과 첨단·혁신 기술의 융복합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음.

다만, 제명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로 의결하는 경우 제1조(목적)에서 “육성 및 지원”을 “육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3) 정의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푸드”, “푸드테크” 및 “푸드테크산업” 등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음(제정안 제2조).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제1호 <sup>12)</sup> 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첨단·혁신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 2. “푸드테크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
| 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12)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

## 나. 검토의견

‘푸드테크’나 ‘푸드테크산업’ 등은 일반적으로 확립된 개념이 없음.

정책 대상 범주의 명확화를 위한 개념 정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주요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제정안의 취지로 보임.

다만, 제정안은 “푸드테크”의 개념을 정의하면서 그 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푸드테크’의 개념은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서 정하되, 제정안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푸드테크산업’의 범주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은 제7조에서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이하 제12조에서 약칭하고 있음.

그러나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대상인 점을 고려하여, 이를 정의조항에서 별도로 규정하여 법 해석과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히 하는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4. “푸드테크사업자”란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푸드테크산업 10대 핵심기술분야(안)]

| 핵심기술                | 연구 방향                                                                                                                                                                                            |
|---------------------|--------------------------------------------------------------------------------------------------------------------------------------------------------------------------------------------------|
| 세포배양<br>식품<br>생산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양액 핵심 소재, 지지체 등 신소재 발굴 및 생산 효율화 기술개발</li> <li>▶ 고급육 모사를 위한 구조화 등 배양육 품질(식감·풍미) 고도화 기술개발</li> <li>▶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대량 배양 공정기술 개발 등</li> </ul>              |
| 식물기반<br>식품<br>제조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리단백, 구조화단백 등 식물성 대체식품 소재 기술개발</li> <li>▶ 고품질 단백질 구조체 대량생산을 위한 스케일업 기술 및 설비 개발</li> <li>▶ 대체 지방, 물성 구현 소재 등 고기능 신규 첨가원료 발굴</li> </ul>                   |
| 간편식<br>제조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K-Food 특성 연구 및 DB화</li> <li>▶ K-Food 간편식 생산 자동화, 포장 개선 등을 위한 기술개발</li> </ul>                                                                            |
| 식품프린팅<br>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 농산물의 식품프린팅 적성 등 특성 연구 및 DB화</li> <li>▶ 물성제어 등 식품프린팅 가공기술 및 표준모델 개발</li> <li>▶ 식품 잉크 소재 개발, 보존·유통 기술개발</li> </ul>                                     |
| 식품스마트<br>제조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제조업 분야 AI, 로봇 등 기반 협동기술* 개발</li> <li>* 인간과 로봇이 같은 공간에서 협동 작업을 수행하는 기술, 센서를 탑재하여 사람과 물리적 상호작용</li> <li>▶ 주요 품목 제조공정별 이물질 검출 등을 위한 푸드센서 기술개발</li> </ul> |
| 식품스마트<br>유통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농산물 수확후 품질 판정 등 인공지능 모델 개발</li> <li>▶ IoT 기반 농산물 가공시스템 실시간 모니터링 및 고도화 기술</li> </ul>                                                                  |
| 식품<br>커스터마이<br>징 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특성, 건강 상관성 등 기초 정보 DB화</li> <li>▶ 개인별 질환, 유전정보 등에 기반한 식이설계 알고리즘 개발</li> <li>▶ 질환별 관리식 적용을 위한 소재 발굴 및 생산기술 개발</li> </ul>                              |
| 외식<br>푸드테크<br>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봇, 수요예측 AI 등 외식 매장관리 자동화 기술개발</li> <li>▶ 메뉴별 영양성분 정보, 고객 평가 분석 등 소비자 맞춤형 데이터 이용 기술개발</li> </ul>                                                        |
| 식품업사이<br>클링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식품 부산물 성분 DB 구축 및 원료처리 공정 효율화</li> <li>▶ 농식품 부산물 종류별 업사이클링 용도 다양화를 위한 연구개발</li> </ul>                                                                  |
| 친환경식품<br>포장기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량화 등 플라스틱 절감 기술개발</li> <li>▶ 플라스틱 포장재의 재활용성 제고를 위한 고차단성 유니소재 기술개발</li> <li>▶ PHA 등 생분해성 원료 기반 식품포장 소재 생산기술 개발</li> </ul>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있음.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푸드테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을 두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을 유도하는 등 법률의 입법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5) 다른 법률과의 관계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나. 검토의견

제정안 제4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시 이를 우선 적용하려는 취지로 이 법이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일반법의 지위에 있음을 나타내는 규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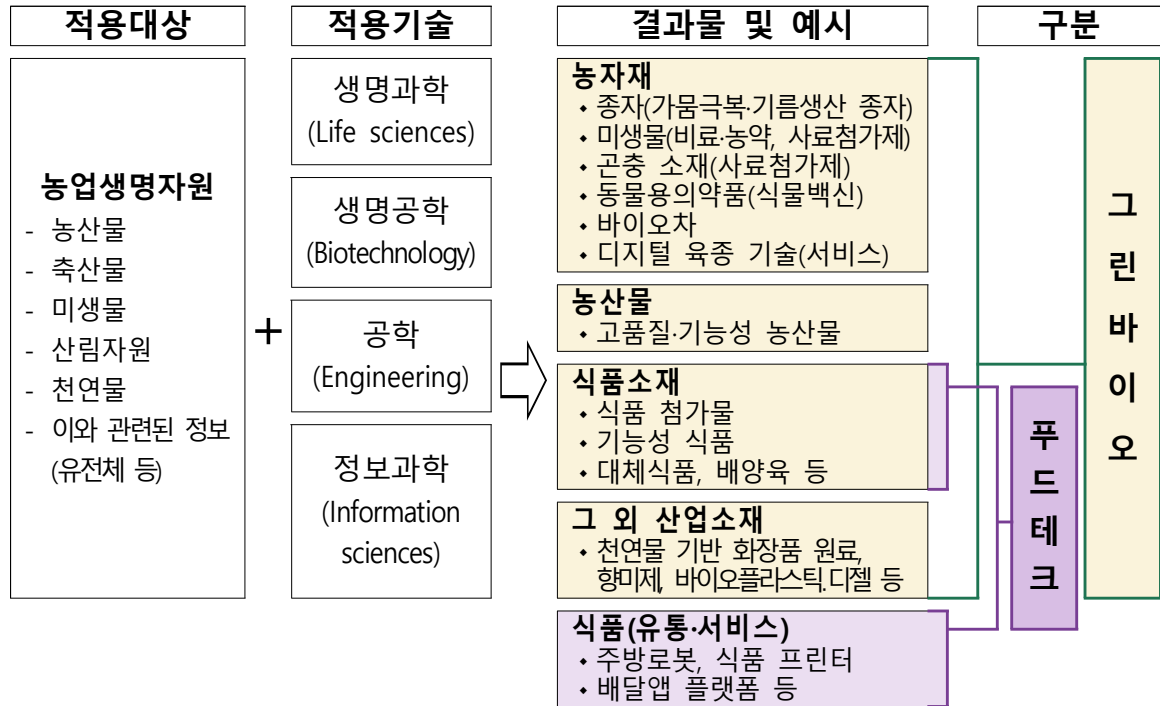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푸드테크산업의 범주 중 ‘식품소재’ 분야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그린바이오 산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 제정안 간에 중복되는 산업 분야, 기업, 제품 등에 대한 법 적용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sup>13)</sup>.

13) 「푸드테크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김도읍의원안), 「푸드테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의원안)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푸드테크산업과 그린바이오산업의 범위(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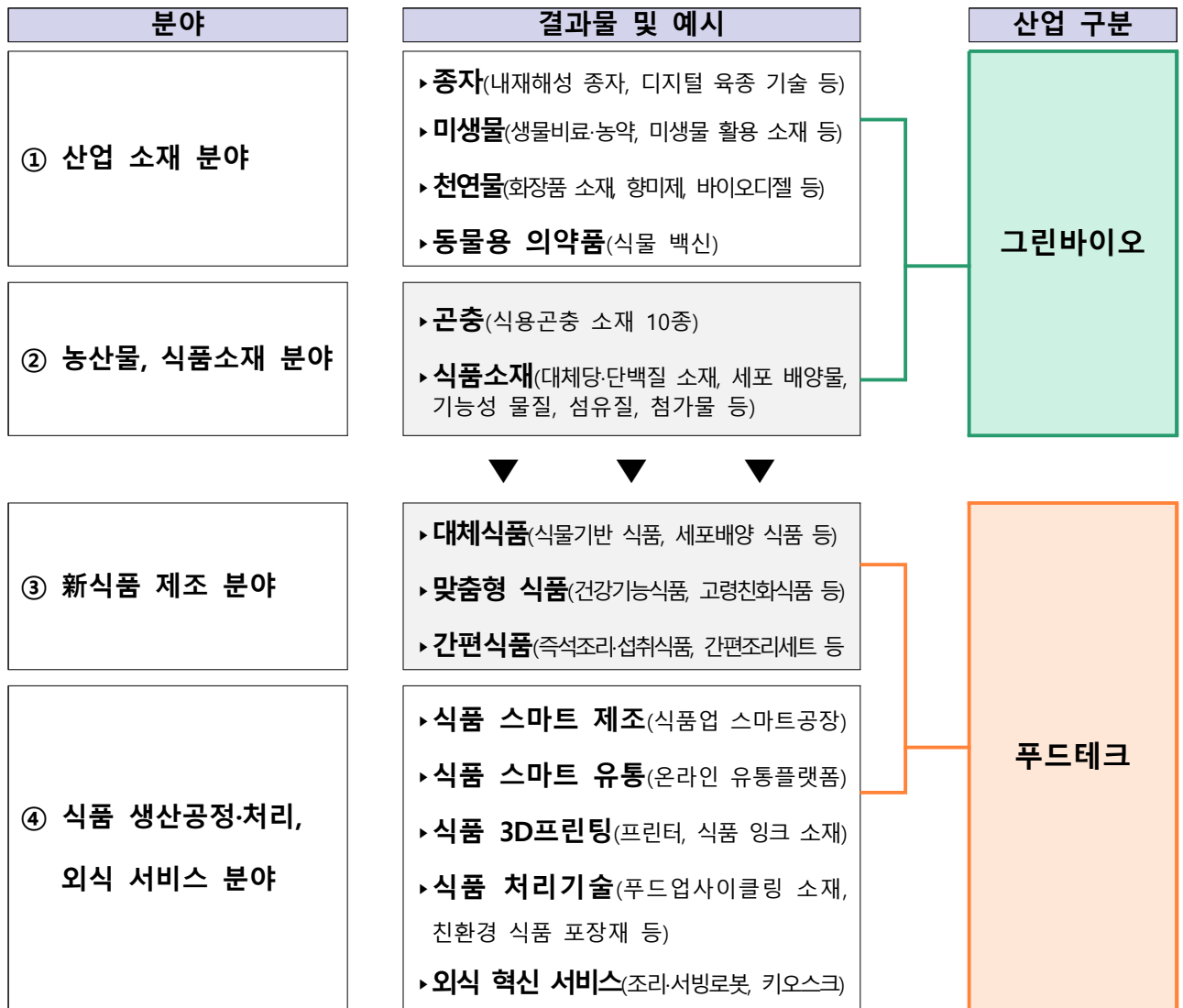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향후 시행령을 마련할 때 중복되는 ‘식품소재’ 분야 중, ‘그린바이오산업’은 곤충, 대체당·단백질, 세포배양물, 섬유질 등의 소재산업으로, ‘푸드테크산업’은 식물기반 식품, 세포배양 식품 등 완제품산업으로 구분하여 법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임.

다만, 이러한 사항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서 그 관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 (6)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푸드테크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2. 푸드테크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발전 전망
3. 푸드테크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
4.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푸드테크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푸드테크산업 발전을 위한 창업 지원
7.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
9. 그 밖에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검토의견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무와 관련된 계획·시책·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집행 및 노력을 유도하여 법률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조항임.

현재 푸드테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국가 단위의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그에 따라 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바, 제정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이 국가 단위의 중·장기 목표에 따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7)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김선교·한병도의원안                                                                                                                                                            | 김도읍의원안                                                                                                                                                                                                                                                                                                                                                                                                                                   |
|-----------------------------------------------------------------------------------------------------------------------------------------------------------------------|------------------------------------------------------------------------------------------------------------------------------------------------------------------------------------------------------------------------------------------------------------------------------------------------------------------------------------------------------------------------------------------------------------------------------------------|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 <u>정부는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를 작성·관리할 수 있다.</u><br>②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대상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제6조(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u><br>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u><br>③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u><br>④ <u>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는 3년으로 하며,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기본계획의 수립,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의 입안 및 성과 관리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푸드테크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김선교·한병도의원안의 경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의 주체를 정부로 두고 있는 반면, 김도읍의원안은 실태조사와 통계작성의 주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되, 통계작성 시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하면서, 통계작성을 위한 자료제공요청의 근거,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3년) 등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① 다수 부처가 협업하거나 관련 업무가 다수 부처에 걸쳐있는 사항을 관장하는 법률의 경우 실태조사의 주체를 주무부처 장관이 아닌 정부로 두는 입법례<sup>14)</sup>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 ② 실태조사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면서 주기를 정하여 법률에 명시하는 것은 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선교·한병도의원안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나, ③ 실태조사 자료제공요청 근거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사항을 일부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임.

---

14)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실태조사) ① 정부는 게임산업 관련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게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유사입법례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실태조사) ① 정부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남극에 관한 연구활동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8)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요건을 갖추어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변경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한병도의원안                                                                                                                                                                                                                                                                                                                                                                                                | 김선교·김도읍의원안                                                                                                                                                                                                                                                                                                                                                                                            |
|-------------------------------------------------------------------------------------------------------------------------------------------------------------------------------------------------------------------------------------------------------------------------------------------------------------------------------------------------------------------------------------------------------|-------------------------------------------------------------------------------------------------------------------------------------------------------------------------------------------------------------------------------------------------------------------------------------------------------------------------------------------------------------------------------------------------------|
| <p>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p> | <p>제7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등) ① 푸드테크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 정보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푸드테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는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p> <p>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p> |

| 한병도의원안                                                                                                                                                                                                                                                                                           | 김선교·김도읍의원안                                                                                                                                                                                                                                                                                              |
|--------------------------------------------------------------------------------------------------------------------------------------------------------------------------------------------------------------------------------------------------------------------------------------------------|---------------------------------------------------------------------------------------------------------------------------------------------------------------------------------------------------------------------------------------------------------------------------------------------------------|
| <p>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u>연장된</u>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u>연장 또는 재연장된</u>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p> <p>⑤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년으로 하며, 계속하여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고를 갱신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의 요건, 신고수리의 처리와 신고 갱신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푸드테크사업자 신고에 관한 규정을 두어, 푸드테크산업 육성 정책의 대상자를 명확히 함으로써 R&D, 자금 지원 등 관련 지원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또한 푸드테크사업자 신고를 통해 사업자의 핵심기술 분야별 비중, 지역별 분포, 매출액 등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수집함으로써 관련 정책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또한 제정안에 따른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확히 하여

신고절차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신고 유효 기간과 갱신 절차를 두어 3년마다 신고 갱신을 통하여 푸드테크 사업자임을 입증하도록 함으로써 부정 지원을 방지하고 적합한 대상자에 대한 정책 집행을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일반적으로 유사입법례에서는 허가제, 등록제 또는 신고제 등의 절차를 규정하여 이와 같은 취지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제정안은 그 중 보다 완화된 방식인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채택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임.

#### [허가·등록·신고의 구분]

| 구분 | 허가                            | 등록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
| 개념 |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 |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 |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 |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항에 따른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요건과 관련하여, 향후 대통령령으로 ‘푸드테크 10대 핵심분야 기술’을 규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경영하는 사업체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포함하는 경영 정보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 요건을 구체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다만, 제정안에 따르면 신고시 제공하여야 하는 경영정보의 범주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예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에 따라 일부 문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법 제정을 대비하여 마련 중인 시행령(안)에서 매출액·전문인력 보유현황을 요건으로 할 계획<sup>15)</sup>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이를 반영하여 수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요하는 중요 사항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도록 시행령(안)<sup>16)</sup>을 참조하여 그 일부를 예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제정안 제7조제3항과 관련하여 유사입법례<sup>17)</sup>와 같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여부를 통지할 의무가 있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같은 조 제4항도 각 의원안 별로 일부 문구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유사 입법례에 비추어볼 때 김선교·김도읍의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이

---

15) [제정안 시행령(안)] 제5조(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요건) 법 제7조제1항에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대표자는 제외한다.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2명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2. 푸드테크사업자의 총매출액 중 푸드테크산업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중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16) [제정안 시행령(안)] 제8조(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또는 명칭
2. 법인 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
3.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4. 대표자
5. 신고업종

1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그린바이오기업의 신고 등) ① · ② (생 략)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 ⑥ (생 략)

[연구산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전문연구사업자”란 전문성을 갖추어 연구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6조(전문연구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연구사업자 중 이 법에 따른 지원 등을 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 ⑥ (생 략)

## (9) 전문인력의 양성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제 정 안                                                            |
|------------------------------------------------------------------|
| 제8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현재 기업으로부터 식품과 AI·로봇기술 등이 융복합된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관련 교육과정 및 전문가에 관한 정보는 불충분한 측면이 있음.

푸드테크산업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과제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업 신규인력 양성, 재직자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전문인력 양성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푸드테크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추진 현황]

| 핵심기술 분야    | 연구 방향                                                                                                                                                                                                                                                                     |
|------------|---------------------------------------------------------------------------------------------------------------------------------------------------------------------------------------------------------------------------------------------------------------------------|
| 기업 신규인력 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부와 협업하여 주요 대학에 식품과 AI·로봇기술 등을 접목한 ‘(가칭)푸드테크 융합인재 양성 교육과정’ 신규 개설 추진</li> <li>- 지정된 학교에 강사비·장학금·운영비 등 지원 (年 3억원/1개교)</li> </ul>                                                                                                  |
| 재직자 교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업 수요에 부응하여 푸드테크 계약학과<sup>*1</sup> 단계적 확대('22: 4개교 → '27: 12)</li> <li>* 농식품부와 4개 대학(서울대, 고려대, 한양대, 경희대)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li> <li>- 기업 투자, 법률 등 타 분야 인재 유입이 가능하도록 계약학과 학생 선발기준 개선 ('22, 예: 식품분야 재직자 → 비식품기업 10% 이내 허용)</li> </ul>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 (10) 창업 지원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정부가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 제9조(창업 지원)     | 정부는 푸드테크산업 관련 창업 촉진,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신규 창업자들이 푸드테크 산업 분야에 진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련 기관은 창업자금의 지원, 벤처캠퍼스·전문 엑셀러레이터<sup>18)</sup>를 통한 창업보육의 지원,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청년식품창업센터 등을 통한 창업가 양성 등의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

### [푸드테크 창업 관련 지원 현황]

| 구 분     | 내 용                                                                                                                                                               |
|---------|-------------------------------------------------------------------------------------------------------------------------------------------------------------------|
| 창업자금 지원 | ○ 창업 초기자금은 엔젤투자, 크라우드펀딩 등 연결 강화<br>○ ‘푸드테크 투자정보 플랫폼’을 구축(‘23.9.)하여 기업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 사업계획서 작성 등 컨설팅, 크라우드펀딩 중개 수수료 지원(농금원)<br>○ 푸드테크 창업기업에 벤처창업자금(최대 280백만원) 우선 지원 |

18) 엑셀러레이터(Accelerator)”: 스타트업이나 초기 단계의 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조직. 일정 기간 동안 스타트업에게 멘토링, 자금 지원, 네트워크 제공, 교육, 사무 공간 제공

| 구 분        | 내 용                                                                                                                                                                                                                                                                                                                                                                                                                                                                                                                                                                                                                                                                                                                  |
|------------|----------------------------------------------------------------------------------------------------------------------------------------------------------------------------------------------------------------------------------------------------------------------------------------------------------------------------------------------------------------------------------------------------------------------------------------------------------------------------------------------------------------------------------------------------------------------------------------------------------------------------------------------------------------------------------------------------------------------|
| 창업보육<br>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별 푸드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플랫폼 구축</li> <li>○ 벤처캠퍼스* 를 통해 비즈니스 모델 수립부터 시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진단 등 연구개발·마케팅 통합 지원('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벤처창업자에게 연구장비, 창업교육 등 제공('24년 익산 → '25년 평창, 포항/ 총 3개소)</li> </ul> </li> <li>○ 푸드테크 전문 엑셀러레이터*社를 선정하여 유망 창업기업에 대한 멘토링, IR, 제품시연 등을 위한 홍보행사 개최 추진('23~, 농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멘토링 등 종합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li> </ul> </li> </ul> <p><b>&lt; 푸드테크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해외사례:프랑스&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6년 파리지청이 설립, 300개 이상의 스타트업과 공동으로 자금 조달 운영</li> <li>▶ 스타트업과 식품기업간 네트워킹, 기술애로 해소 컨설팅, 공동 연구실 등 지원</li> <li>▶ 주로 디지털 유통, 푸드 업사이클링, 대체식품 원료 개발에 집중</li> </ul>  |
| 창업가<br>양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테크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 벤처연구팀* 을 대상으로 팀간 네트워킹·전문가 특강 등을 통해 사업화 모델 개발 지원('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2년: 3개소(서울대, 고려대 세종캠퍼스, 한양대) → '27년 목표: 9개소</li> </ul> </li> <li>-국가식품클러스터 창업지원 랩(Lab)과 연계하여 창업공간 입주 신청시 우선 지원, 장비 이용료 할인 등 지원</li> </ul> <p><b>&lt; 대학 벤처연구팀 성공 사례&gt;</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년 절단과일 살균 및 갈변 억제를 위해 화학 약품 대신 UV LED '친환경 과채 세척기' 개발, 특허를 받아 '21.4월 창업 <div data-bbox="1043 1323 1347 1458" data-label="Image"> </div> </li> <li>○ 청년식품창업센터('24 준공 예정) 등을 활용하여 푸드테크에 관심있는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 현장교육 지원(식품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대면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교육 참여자의 지역 접근성 제고</li> </ul> </li> </ul>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제정안은 이러한 창업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두려는 취지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11) 기술개발의 촉진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건의 제정안은 정부에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 동향 및 수요 조사, 연구개발 등을 추진할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10조(기술개발의 촉진)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br>1.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 동향 및 수요조사<br>2.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br>3. 기술협력·기술이전 등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br>4.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br>5. 그 밖에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개발 촉진에 필요한 사항 |

###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푸드테크 연구·개발의 활성화, 기술의 실용화,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푸드테크 분야”의 의미가 불명확한 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을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
  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항
-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0조(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촉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 디지털 전환에 관한 기술·장비·소프트웨어와 산업 디지털 전환을 통한 제품·서비스(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등에 관한 실태·통계 조사
2. 기술등의 개발 및 사업화
3. 개발된 기술등의 평가 및 활용
4. 기술등의 개발을 위한 기반 구축
5. 그 밖에 기술등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12) 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정부가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해 연구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11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푸드테크 관련 시설·장비는 상당히 고가로, 영세한 식품·외식기업('21년 기준, 10인 미만 기업이 91%)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국가식품클러스터도 익스트루더<sup>19)</sup>의 경우 1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등 기존 식품 관련 인프라 역시 푸드테크 관련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임.

농림축산식품부는 미국 등 다른 나라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설립 사례<sup>20)</sup> 등을 참고하여 푸드테크 소재 개발부터 제품의 테스트까지 전 과정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장비를 지원함으로써, 푸드테크 기업

19) 대체식품 소재 개발용 원료압출기로서 1대당 비용은 약 20~50억원 수준임.

20)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해외 사례]

누구나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의 구축사업을 진행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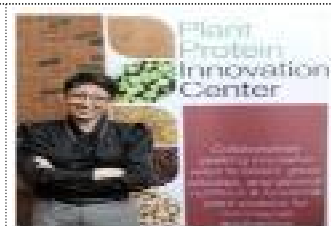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사업 현황]

- (개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거점 지원시설
  - \* (혁신클러스터) 지역 푸드테크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 협력하는 협업체
  - \* (지원시설) 푸드테크 기업입주,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을 위한 시설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 중소식품·외식업체, 기업, 연구기관·대학교 등
- (구축분야) ①식물성 대체식품, ②식품로봇, ③식품업사이클링
  - \* 식물성대체식품(전북 익산), 식품로봇(경북 포항), 식품업사이클링(전남 나주)
- (지원내용) ①푸드테크 기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②대학·연구기관을 통한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애로 컨설팅, ③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확산 지원
- (사업규모) '24~'26년, 3개소, 총사업비 315억원('24년 : 3.75억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 美 미네소타대학교 식물단백질혁신센터(PPIC)

- ▷ 대체 단백질을 연구하는 미국 최초의 학제간 연구센터
- ▷ 식물 단백질 소재 및 제품 연구, 마케팅 등 기업 통합 지원
- ▷ 기업과 연구자간 네트워킹을 통해 전문인력 채용으로 연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농림축산식품부는 동 센터가 구축될 경우 시설·장비의 지원 뿐 아니라 장비 활용 교육, 기업애로 지원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배치·연계 및 시설·장비 공동 이용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등에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체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 유사입법례

[건설기술 진흥법]

**제10조(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13)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정부가 푸드테크산업 관련 국제협력과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참여하는 자에 대한 경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12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① 정부는 푸드테크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시장개척·홍보, 공동 연구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br>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또는 제7조에 따라 신고한 푸드테크사업자(이하 “푸드테크사업자”라 한다) 등에게 국제규범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푸드테크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신사업 분야로서 국제협력을 통한 기술의 개발과 새로운 판로의 개척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보가 동 산업 육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임.

이를 위하여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는 푸드테크 기업 등의 해외 진출 시 필요한 시장정보의 제공, 타겟 국가별 맞춤형 지원, K-푸드테크 인지도 제고를 위한 행사 추진 등의 지원<sup>21)</sup>을 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러한 사업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지속적·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 [푸드테크 해외진출 관련 지원 현황]

| 구 분    | 내 용                                                                                                                                    |
|--------|----------------------------------------------------------------------------------------------------------------------------------------|
| 정보제공   | 해외진출 준비시 필요한 시장정보의 제공(aT)                                                                                                              |
|        | - 미국·EU 등 푸드테크 시장이 큰 국가 중심으로 식품 규제(첨가물, 표시기준 등), 인증, 시장동향 등 정보를 정기적으로 조사·제공                                                            |
| 현지화 지원 | 기업별·제품별 타겟 국가 맞춤 지원(aT)                                                                                                                |
|        | - 국가별 시장 선호를 고려한 유망상품 개발, 마켓테스트, 해외인증 취득 지원, 현지 통관·검역·라벨링 등 컨설팅 지원<br>- 푸드테크 분야별 특화 유통망(예: 대체식품-비건식당, 고령친화식품-병원) 및 바이어 등의 정보를 DB화하여 제공 |
| 시장 확대  | K-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제고(aT)                                                                                                            |
|        | - 유망 푸드테크 제품에 대한 홍보 콘텐츠 제작,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한 판촉 확대, 소비자체험 행사 등 추진<br>- 해외 유명 식품 박람회 참가 및 K-Food 페어에서 홍보관 운영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 21) [푸드테크 식품 수출 지원 사례]

| 수출품목 | 제품                                                                                  | 지원내용                                                                                                                                                       |
|------|-------------------------------------------------------------------------------------|------------------------------------------------------------------------------------------------------------------------------------------------------------|
| 대체육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년 원두를 활용한 식물성 대체육(햄버거 패티) 개발, 홍콩·싱가포르 등 6개국 수출 중('21년 수출액: 32만불)</li> <li>▶ 마켓테스트, 해외인증 취득 등 현지화 지원</li> </ul>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다만,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련 기술”을 “푸드테크산업 관련 기술”로 명확히 하고, 같은 조 제1과 제2항의 주체가 다르므로 이를 “정부”로 일원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14) 금융지원 등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정·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금융 지원이 필요한 기업 등에 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이를 통해 푸드테크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제13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나. 검토의견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기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위하여 '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조성을 추진 중에 있고, 벤처캐피탈 등을 활용한 지원도 추진할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제정안은 이와 같은 금융지원의 근거를 두어 지속적·안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이고,

#### ※ 유사입법례

##### [산업융합 촉진법]

제35조(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융합의 촉진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융합 신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제조자등에게 재정 및 금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현행 푸드테크 관련 재정·금융 지원 정책 추진 현황을 감안하여, 그 대상을 “푸드테크사업자”로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수석전문위원 수정의견(안)                                                                                 |
|--------------------------------------------------------------------------------------|------------------------------------------------------------------------------------------------|
| 제13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u>조성하기 위하여</u>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3조(금융지원 등) 정부는 푸드테크 분야의 기술혁신과 푸드테크산업 기반을 <u>조성하기 위하여 푸드테크사업자에게</u> 금융 및 재정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 [푸드테크 관련 재정·금융 지원 정책 추진 현황]

| 구분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
| 펀드조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7년까지 1천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을 검토하여 사업단계별로 필요한 자금 지원(농금원)</li> <li>* 조성목표(억원) : (‘23) 100→(‘24) 200→(‘25) 200→(‘26) 250→(‘27) 250</li> <li>** 최근 5년간 간당 평균 투자금액은 10억원(1,000억원 조성으로 100건 투자가능)</li> <li>○ 원료매입 및 시설자금(‘24: 1,446억원)도 푸드테크 기업에 우선 지원, 기술평가를 통한 혁신기업 선별 및 신용보증 지원</li> </ul> <p style="text-align: center;">&lt; 농식품펀드 지원 우수기업 사례 &gt;</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flex: 1;"> <p>’20~’22년 농식품펀드 55억원, VC 279억원 투자 유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몬드우유에 발효공법을 접목시켜 100% 비건 치즈 개발, 美 뉴욕 등 오프라인 매장 200곳에 납품 중(’21년 매출액 95억원)</li> <li>▷ ‘22년, 중기부 ’예비 유니콘 기업* 으로 선정</li> <li>*기술보증기금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특별보증 가능</li> </ul> </div> <div style="flex: 0.5; text-align: center;">  </div> </div> | 푸드테크사업자                       |
| 벤처캐피탈활용지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장 확대에 필요한 자금은 벤처캐피탈 등 활용 지원</li> <li>○ 국내·외 IR 확대(연 2회 → 4회), 기업설명·제품시연·투자자매칭 등을 위한 푸드테크 투자로드쇼(연 1회) 개최(농금원)</li> </ul>                                                                                                                                                                                                                                                                                                                                                                                                                                                                                                                                                                                                                                                                                                                       | 푸드테크사업자, 농식품기업, 농산업기업, 농업법인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 (15) 전담기관의 지정 등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건의 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푸드테크산업 육성과 관련한 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푸드테크 관련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담기관에 대한 지원과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 김선교·김도읍의원안                                                                                                                                                                                                                                                                                                                                                                               | 한병도의원안                                                                                                                                                                                                                                                                                                                                                                                                                                           |
|------------------------------------------------------------------------------------------------------------------------------------------------------------------------------------------------------------------------------------------------------------------------------------------------------------------------------------------------------------------------------------------|--------------------------------------------------------------------------------------------------------------------------------------------------------------------------------------------------------------------------------------------------------------------------------------------------------------------------------------------------------------------------------------------------------------------------------------------------|
| <p>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 <p>제14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p>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p> <p>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p> <p><b>2.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b></p> |

| 김선교·김도읍의원안                                                                                                                                                                                                                                                                                                                                                                                                                                       | 한병도의원안                                                                                                                                                                                                                                                                                                                                                                                                                                           |
|--------------------------------------------------------------------------------------------------------------------------------------------------------------------------------------------------------------------------------------------------------------------------------------------------------------------------------------------------------------------------------------------------------------------------------------------------|--------------------------------------------------------------------------------------------------------------------------------------------------------------------------------------------------------------------------------------------------------------------------------------------------------------------------------------------------------------------------------------------------------------------------------------------------|
| <p>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제18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점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p> <p>4.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p> <p>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p>3.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4.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점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경우</p> <p>5.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p> <p>④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전담기관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시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p> <p>⑥ 제1항에 따른 지정,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업무정지 및 제4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

## 나. 검토의견

현재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전담기관은 부재한 상황임.

푸드테크산업 지원업무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다수의 공공기관에 분산되어 수행되고 있음.

### [푸드테크산업 관련 주요업무 수행 현황]

| 구 분            | 푸드테크 관련 주요업무 수행 현황                                                                                                                                                                                                                                                                              |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 <b>【푸드테크 분야 수출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 푸드테크 식품 규제, 인증, 시장동향 조사</li> <li>· 해외인증 취득 지원, 현지 통관·검역·라벨링 등 컨설팅 지원</li> <li>· 해외 유명 식품 박람회 참가 및 K-Food 페어 홍보관 운영</li> </ul> <b>【푸드테크 분야 실태조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테크 분야별 기업 현황에 대한 조사</li> </ul> |
| 한국농업정책보험금융원    | <b>【푸드테크 분야 투자 자금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테크 전용 펀드 조성</li> <li>· 푸드테크 등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구축</li> <li>· 국내·외 IR(투자설명회), 투자로드쇼 개최</li> </ul>                                                                                                                               |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 <b>【푸드테크 분야 R&amp;D 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테크 10대 핵심 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과제 기획</li> <li>· (가칭) K-푸드테크 이니셔티브 연구개발 사업 추진</li> </ul>                                                                                                                                           |
|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 <b>【푸드테크 분야 시설·장비·교육】</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식품 공정 관련 장비 활용 교육, 기업 기술 애로 지원</li> <li>· 청년식품창업센터 등 활용한 실습 위주 현장 교육 지원</li> </ul>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b>【푸드테크 분야 창업지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테크 전문 엑셀러레이터社 선정하여 창업기업 멘토링</li> <li>· 푸드테크 창업기업 대상 벤처창업자금 우선 지원</li> </ul>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전담기관이 푸드테크산업에 관한 지원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 1개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총괄지원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계획인데,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는 현재 공공기관별로 분산·중복되어 있는 푸드테크산업 지원 업무를 향후 효과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한편, 제정안은 전담기관 지정의 유효기간(3년)을 법률에 명시하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또한 전담기관의 푸드테크산업 육성에서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담기관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에 불응하거나 거짓으로 응하는 경우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전담기관에 대한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한병도의원안의 경우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필수적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인증기관·전문검사기관 등 국가업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정·등록 취소에 대하여는 유사한 규정을 둔 사례가 있으나, 전담기관 관련 입법례에서는 이를 필수적 지정취소 사유로 하는 사례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담기관은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지정된 기관으로서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업무를 수행한 경우'를 필수적 지정취소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관련규정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농촌융복합산업 지원 전문기관 등)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지정된 지원기관 및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지원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제3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하거나 보고·검사를 방해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6조(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성능검사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4호·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업무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성능검사대행업무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8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 (16)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건의 제정안은 푸드테크 관련 기업, 지역대학·연구기관, 지역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인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5.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지역대학·연구기관, 지역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
| 제15조(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의 육성·지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br>1.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지원시설의 설립 및 운영<br>2.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공동 연구개발, 기술 실증을 위한 지원<br>3.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 강화<br>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br>5. 그 밖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제정안들은 안 제2조제5호에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지역 단위 푸드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지역대학·연구기관,

지역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와 협력을 하는 협업체로 규정하면서, 안 제15조에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지리적 집적과 입지 공간을 중심으로 특정 산업 또는 업종을 지원하는 법률 규정 방식에는 ① 기업 유치 등을 위한 인·허가 절차 특례, 세제 지원 등에 중점에 두는 특구방식과 ② 연구·개발, 인력육성, 기반시설 설치 지원 등에 중점을 두는 클러스터(거점단지)방식이 있음.

#### [특구 및 클러스터 비교]

| 구분   | 특구                                                               | 클러스터(거점단지)                                                          |
|------|------------------------------------------------------------------|---------------------------------------------------------------------|
| 지원내용 | ○ 규제개선 특례 조치 중심<br>- 법률적용 특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재정지원, 인허가 절차에 대한 특례 등 | ○ 정책지원 중심<br>- 인력육성 등 재정지원, 기반시설 설치 지원, 규제개선 특례 조치 가능               |
| 입법례  |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 ·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국가 식품클러스터<br>· 「특정연구개발단지의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연구단지 등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제정안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지정·조성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음.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여 조성하거나 기업·학계의 협업체로서 자생적으로 조성된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 푸드테크 육성을 하려는 취지로 보임.

이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10개 핵심 기술별’로 각 지역에 설립을 추진 중인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를 통해 공동연구개발·실증지원, 푸드테크 기업 역량강화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푸드테크 혁신 클러스터’를 육성하려는 것으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다만, 농림축산식품부가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를 직접 지정·조성하지 않고, 클러스터의 운영기관도 따로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관련 사업 참여만으로 출연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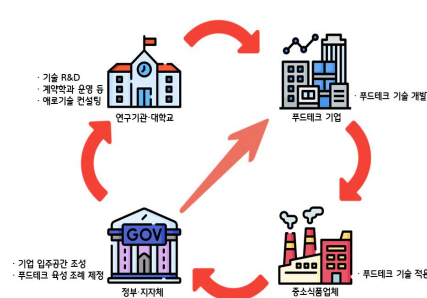
###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개요]

#### □ (개념)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구성에 필요한 거점 지원시설

- (혁신클러스터) 지역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상호연계·협력하는 협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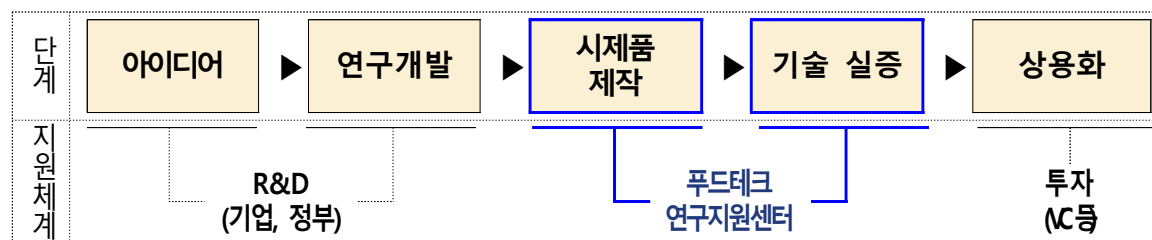
#### < ‘식품로봇’ 분야 혁신클러스터 사례(경북 ‘포항’) >

- ▶ 경북 포항은 ‘K-키친 프로젝트’ 추진 중
  - 지자체 : 식품로봇 등 푸드테크 기업 10개소 투자유치
  - 지역 대학·연구기관(포스텍로봇산업융합연구원 등) : 관내 식품제조외식기업에 적용할 식품로봇 공동연구
  - 포스텍 : 푸드테크 계약학과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푸드테크 기업 및 관내 식품기업의 기술 애로 해결



- (지원센터) 푸드테크 기업입주, 시제품 제작·기술 실증 등을 위한 시설

#### <푸드테크 사업화 단계별 지원체계>



☐ **(추진방향)** ‘32년까지 푸드테크 10대 핵심 기술 쏠 분야\*에 대해 구축

\* ①세포배양식품 생산기술, ②식물기반식품 제조, ③간편식 제조, ④식품프린팅, 스마트 ⑤제조·⑥유통, ⑦식품업사이클링, ⑧식품커스터마이징, ⑨친환경포장, ⑩식품로봇

☐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중소식품·외식업체, 푸드테크 스타트업, 연구기관·대학교

☐ **(사업규모)** ‘24~’26년, 3개소, 총사업비 315억원(‘24년 3.75억원)

☐ **(지원내용)** ①푸드테크 스타트업이 공동 활용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지원,  
②지역대학·연구기관을 통한 푸드테크 기업 기술 애로 컨설팅,  
③푸드테크 기술의 현장 실증 등 중소식품업체에 푸드테크 기술 확산 지원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푸드테크정책과, 2024.8.16.제출

## (17) 규제개선 의 신청 등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건의 제정안은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필요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김선교·김도읍의원안                                                                                                                                                                                                                                                                                                                                                                                                         | 한병도의원안                                                                                                                                                                                                                                                                                                                                                                                                            |
|--------------------------------------------------------------------------------------------------------------------------------------------------------------------------------------------------------------------------------------------------------------------------------------------------------------------------------------------------------------------------------------------------------------------|-------------------------------------------------------------------------------------------------------------------------------------------------------------------------------------------------------------------------------------------------------------------------------------------------------------------------------------------------------------------------------------------------------------------|
| 제1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등은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br>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u>신청기업</u>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 | 제1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푸드테크사업자 등은 푸드테크산업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br>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br>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u>푸드테크사업자</u>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

| 김선교·김도읍의원안                                                                                                                                                                                                                                                                                                                                                                                                                                                                                                                                                                                                                           | 한병도의원안                                                                                                                                                                                                                                                                                                                                                                                                                                                                                                                                                                                                                                  |
|--------------------------------------------------------------------------------------------------------------------------------------------------------------------------------------------------------------------------------------------------------------------------------------------------------------------------------------------------------------------------------------------------------------------------------------------------------------------------------------------------------------------------------------------------------------------------------------------------------------------------------------|-----------------------------------------------------------------------------------------------------------------------------------------------------------------------------------------------------------------------------------------------------------------------------------------------------------------------------------------------------------------------------------------------------------------------------------------------------------------------------------------------------------------------------------------------------------------------------------------------------------------------------------------|
| <p>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p>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p> <p>④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에 따른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p> <p>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p> <p>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p> <p>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규제개선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

| 김선교·김도읍의원안                                                        | 한병도의원안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 심의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 심의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푸드테크 산업은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산업분야로서 신기술의 개발과 실증·상용화 과정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규제의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고, 이러한 규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범부처간 협조가 중요한 측면이 있음.

제정안은 푸드테크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푸드테크사업자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규제개선 신청에 관한 유사입법례를 보면 크게 ① 개별 부처 내의 심의회·위원회로 하여금 규제개선의 신청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해당 부처 장관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이를 존중하여 규제개선을 하도록 권고하는 방식과 ② 해당 부처 장관이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에 규제개선의 의견을 제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행정규제 기본법」상의 규제정비 절차에 따라 이를 심사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분됨.

## [규제개선 신청 관련 입법례]

| 구분                                     | 근거법        | 심의기관                         | 장단점                                                                                                                                     |
|----------------------------------------|------------|------------------------------|-----------------------------------------------------------------------------------------------------------------------------------------|
| ① 별도<br>위원회<br>심의<br>(개별법<br>근거)       | 국가첨단전략산업법  |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br>(국무총리 소속)     | (장점) 해당부처의 분야별<br>전문성 활용, 신속한 심의,<br>부처별 특화된 문제와 요구를<br>반영한 규제개선 가능<br>(단점) 객관성, 부처간 조율,<br>결정의 일관성 부족                                  |
|                                        | 산업디지털전환법   |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br>(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                                                                                                                                         |
|                                        | 스마트제조혁신법   | 중소기업정책심의회<br>(중소벤처기업부장관 소속)  |                                                                                                                                         |
| ②규제개혁<br>위원회<br>심의<br>(행정규제<br>기본법 근거) |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 규제개혁위원회<br>(대통령 소속)          | (장점) 객관적 규제평가심사,<br>규제개선의 일관성,<br>중복·상충규제의 조정 가능<br>높은 수준의 규제개선안 도출<br>(단점) 부처의 특수상황·요구<br>미반영으로 규제개선 효과성<br>저하, 심사기간 장기화.<br>부처간 조율 곤란 |
|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규제개혁위원회<br>(대통령 소속)          |                                                                                                                                         |

개정안은 전자의 방식과 같이 ‘식품산업진흥심의회’가 규제신청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유사한 취지로 제21대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산업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식품산업진흥심의회’가 규제개선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대하여 국무조정실과도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입장을 제기한 바 있으나,

제22대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대하여는, 일원화된 창구를 통한 규제정비를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상의 규제개혁심의회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입장으로 수정하였음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스마트제조혁신법]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8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미래자동차부품산업법]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검토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와 달리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제17조의2에 따라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규제개혁위원회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회신한 답변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사항을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라 규제개선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제개선의 신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한편 3건의 제정안은 제16조제1항에서 규제개선 신청의 주체를 “푸드테크사업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불명확한 측면이 있음.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사업자” 이외에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관련 “대학”, “연구기관”도 규제개선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유사업법례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스마트제조혁신법]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제8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 (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규제개선의 신청과 적극행정) ① 미래자동차 부품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에 관련된 규제의 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 관리주체와 첨단투자지구 내의 지식산업센터,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체, 연구기관은 첨단기술 분야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과 관련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다.

## (18) 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김선교의원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관리·감독하도록 하고, 거짓·부정한 방법 등으로 규제개선을 받은 경우 취소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김선교의원안                                                                                                                                                                                                                                                                                                                                                                                                                                       |
|----------------------------------------------------------------------------------------------------------------------------------------------------------------------------------------------------------------------------------------------------------------------------------------------------------------------------------------------------------------------------------------------------------------------------------------------|
| 제17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br>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br>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br>2. 제16조제8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br>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br>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br>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나. 검토의견

개정안은 거짓에 의하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규제개선, 또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위해를 발생시키는 규제개선의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 규제완화·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유사입법례를 살펴보면, ① 규제개선 관리·감독 및 규제개선 취소·시정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하도록 하는 경우(「국가첨단 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와,

② 규제개선 관리·감독은 ‘주무부처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으로(「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하도록 하면서, 규제개선 취소·시정은 주무부처 장관이 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바, 적절한 방식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는 규제개선 취소·시정은 해당 중앙행정 기관이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규제개선 관리·감독은 농림축산 식품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공동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유사입법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부여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29조제8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18조(규제개선 관리 및 감독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 유사입법례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을 적용받아 시행하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관리·감독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 제17조에 따른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계 또는 문책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규제개선을 적용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개선의 적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2. 제17조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재산 또는 환경에 위해가 발생한 경우

④ 규제개선의 적용 취소 절차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19) 보고 및 조사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건의 제정안은 푸드테크사업자·전담기관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김선교·김도읍의원안                                                                                                                                                                                                                                                                                                                                                                                                                                                                   | 한병도의원안                                                                                                                                                                                                                                                                                                                                                                                                                                                                     |
|------------------------------------------------------------------------------------------------------------------------------------------------------------------------------------------------------------------------------------------------------------------------------------------------------------------------------------------------------------------------------------------------------------------------------------------------------------------------------|----------------------------------------------------------------------------------------------------------------------------------------------------------------------------------------------------------------------------------------------------------------------------------------------------------------------------------------------------------------------------------------------------------------------------------------------------------------------------|
| <p><b>제18조(보고 및 조사)</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푸드테크사업자, 전담기관 등에</u>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 <p><b>제17조(보고 및 조사)</b>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는 등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u>푸드테크사업자, 전담기관에</u>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고·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사무실 등에 출입하여 시설·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p> <p>③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

##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행정조사에 대해 규정한 것임.

행정조사의 원칙, 방법·절차 및 실제적·절차적 한계 등에 대해서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게 되며, 행정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야 함<sup>22)</sup>. 따라서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요건 위반여부 확인, 전담기관 감독 등을 위한 보고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한 것은 필요한 입법으로 보임.

다만, 자료제출 요구 및 출입조사의 대상을 김선교의원안은 ‘푸드테크사업자와 전담기관’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한병도의원안과 김도읍의원안은 ‘푸드테크사업자와 전담기관 등’으로 하고 있음.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으로 “조사목적 달성을 데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개별법에서 행정조사의 근거를 규정할 때도 그 목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함.

개정안에 따른 조사는 ‘푸드테크사업자의 신고 요건 위반 여부를 확인하거나 전담기관을 감독’하고자 하는 목적임을 고려할 때, 조사 대상을 ‘푸드테크사업자와 전담기관’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2)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행정조사의 근거) 행정기관은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0) 권한의 위임·위탁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건의 제정안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업무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br>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이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 나. 검토의견

동 조항은 제정안에 따른 각종 지원사업의 주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아닌 정부로 규정되어 있음을 반영하여 해당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관련 권한과 업무를 위임·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다만, 제19조제1항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그 주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유사입법례를 참고하여 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통일하여 수정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입법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21)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건의 제정안은 전담기관의 임직원 및 위탁업무 수행 기관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sup>23)</sup>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의제규정을 두고 있음.

| 김선교의원안                                                                                                                                                                                                                                             | 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p><b>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li> <li><b>제18조제2항</b>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li> </ol> | <p><b>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b>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14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li> <li><b>제19조제2항</b>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li> </ol> |

### 나. 검토의견

전담기관의 업무와 위탁업무는 푸드테크산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공공성이 높은 업무임.

전담기관과 위탁기관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고, 해당 기관 임직원의 공무상 비밀엄수 의무 준수와 공정성·청렴성·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의제하려는 취지임.

2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제130조(제삼자뇌물제공), 제131조(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제132조(알선수뢰)

## (22) 과태료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건의 제정안은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점검·조사를 거부·기피·방해 한 자 등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김선교의원안                                                                                                                                                                                                                                                                                                                                                         | 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p><b>제21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li> <li>2. <u>제18조제1항</u>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li> <li>3. <u>제18조제1항</u>에 따른 점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 <p><b>제20조(과태료)</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li> <li>2. <u>제17조제1항</u>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li> <li>3. <u>제17조제1항</u>에 따른 점검·조사를 거부·기피하거나 방해한 자</li> </ol> <p>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p> |

### 나. 검토의견

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음에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어 형평을 고려한 과태료 규정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법제처는 2019년 2월 ‘과태료 금액지침’을 마련하여, 인허가, 신고, 보고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의 기준금액을 5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23) 부칙

### 가. 제정안의 내용과 취지

3개의 제정안은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으로 하고, 타법개정을 통하여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제2항에 규정된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업무에 제정안에 따른 규제개선 심의를 추가하고 있음.

| 김선교·한병도·김도읍의원안                                   |
|--------------------------------------------------|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 제5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7의2.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규제개선의 심의에 관한 사항 |

### 나. 검토의견

제정안에 따른 하위법령의 정비,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시행일을 법 공포 후 1년으로 규정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식품산업진흥심의회 업무범위를 명확히 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16조를 수정하여 규제개선 신청에 대한 심의기관을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로 변경하는 경우 부칙 제2조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 관련규정

[식품산업진흥법]

- 제5조(식품산업진흥심의회 설치) ①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3. 전통식품의 품목지정 및 표준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취소·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
  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 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 ③ 심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④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417

## 참고

## 규제개혁위원회와 식품산업진흥심의회 비교

| 구분    | 규제개혁위원회                                                                                                                                                                                                                                                                                                                                                     | 식품산업진흥심의회                                                                                                                                                                                                                                                                                                                                                                                                                    |
|-------|-------------------------------------------------------------------------------------------------------------------------------------------------------------------------------------------------------------------------------------------------------------------------------------------------------------------------------------------------------------|------------------------------------------------------------------------------------------------------------------------------------------------------------------------------------------------------------------------------------------------------------------------------------------------------------------------------------------------------------------------------------------------------------------------------|
| 설립 목적 |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br>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br>종합적으로 추진                                                                                                                                                                                                                                                                                                        | 식품산업의 진흥 등에 관한<br>사항을 심의                                                                                                                                                                                                                                                                                                                                                                                                     |
| 주요 역할 | 규제개선 방안 검토 및 심의<br>규제개선 계획수립 및 추진                                                                                                                                                                                                                                                                                                                           | 식품산업 진흥 관련 정책 수립<br>식품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
| 소속    | 대통령 직속 기구                                                                                                                                                                                                                                                                                                                                                   | 농림축산식품부                                                                                                                                                                                                                                                                                                                                                                                                                      |
| 관련 법  |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                                                                                                                                                                                                                                                                                                                                              | 「식품산업진흥법」 제5조                                                                                                                                                                                                                                                                                                                                                                                                                |
| 심의 사항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규제정책의 기본방향과 규제제도의 연구·발전에 관한 사항</li> <li>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li> <li>3. 기존 규제의 심사, 신산업 규제 정비 기본계획 및 규제 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li> <li>4.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li> <li>5.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li> <li>6. 각급 행정기관의 규제개선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li> <li>3. 전통식품의 품목 지정 및 표준 규격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li> <li>4.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취소·해제 및 표시에 관한 사항</li> <li>5. 전통식품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li> <li>5의2. 가공식품 및 음식점등의 원산지 인증에 관한 사항</li> <li>6.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식품클러스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7. 외식산업의 육성 및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식품산업의 진흥 및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li> </ol> |
| 구성    | 위원장(국무총리, 민간위원장)<br>2인 포함, 20~25인으로 구성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br>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                                                                                                                                                                                                                                                                                                                                                                                            |
|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br>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br>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 운영 방식 | 격주 개최 원칙, 필요시 매주 개최                                                                                                                                                                                                                                                                                                                                         | 필요시 비정기 회의 개최                                                                                                                                                                                                                                                                                                                                                                                                                |

※ 당초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기능을 확장하여 규제개선 사항을 심의하려고 하였으나, '식품산업진흥심의회'는 비정기 개최되는 운영 방식의 한계가 있고, 규제개선 필요 과제를 대통령 직속 기구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권고하는 것이 규제 정비에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규제기본법」 상 '규제개혁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는 것으로 수정